

20	년	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「향교재단·종교단체용」 (갑)
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법 인 명	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- (- -)
본 점 소 재 지			

번호	① 단체명	② 사업자 등록번호	③ 개별단체 보유물건수(과세물건수)			④ 종합부동산세
			주택	종합합산 토 지	별도합산 토 지	
총 계						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
이
예
제

신 고 인 :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세무대리인	성명	(인)	사업자등록번호	- -	전화번호
-------	----	-----	---------	-----	------

210mm× 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.

1. ①단체명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적습니다.
2. ②사업자등록번호: ①단체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 포함)를 적습니다.
3. 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: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주택, 종합합산토지,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건수를 적고, 보유물건수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물건수를 적습니다

※ 예)개별단체가 소유한 주택이 6채(공시가격합계 : 10억)이고 종합합산토지가 3필지(공시가격합계 : 2억)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없는 경우

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(과세물건수)		
주택	종합합산 토 지	별도합산 토 지
6(6)	3(0)	

4. ④종합부동산세: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소유이나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
[별지 제64호의13서식(2)] <개정 2022. 3. 18.>

20 년		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「향교재단·종교단체용」(을)				
번호	① 단체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(과세물건수)			④ 종합부동산세
			주택	종합합산 토 지	별도합산 토 지	
※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「향교재단·종교단체용」(갑)의 개별단체별 보유현황 총괄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						

20 년	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(갑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개별단체

개 별 단 체 명		사업자등록번호	
사 업 장 소 재 지			

2. 보유물건 현황명세서

번호	①소 재 지	②과세 유형	③주택유형 또는 지목	④과세면적	
				토지	건물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.

1. ①소재지: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의 주택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보유 물건 소재지를 적습니다.
2. ②과세유형: 주택은 "주택", 종합합산토지는 "종합", 별도합산토지는 "별도"를 각각 적습니다.
3. ③주택유형 또는 지목: ②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로 적고,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(대지, 공장용지,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 등)을 적습니다.
4. ④과세면적: ②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건물(공용면적을 포함)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,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.

[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(2)] <개정 2022. 3. 18.>

[illegible]

210mm×297mm[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]